

# 감 사 원

## 통 보

제 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 부적정

소 관 기 관 이천시

조 치 기 관 이천시

내 용

### 1. 업무 개요

이천시는 「수도법」 제71조 제1항 등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(이하 “상수도원인자부담금”이라 한다)를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·징수하고 있다.

### 2. 관계법령(판단기준)

「수도법」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·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<sup>174)</sup>의 신설이나 증설 등을 하는 데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·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, 비용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상수도

---

174) 원수시설, 정수시설, 송수시설, 배수시설

조례”라 한다) 제5조 제4항,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[별표 1]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<sup>175)</sup> 단위사업비는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, “이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”(2011년 6월)<sup>176)</sup>에 따르면 이천시는 이천정수장<sup>177)</sup>, 장호원배수지<sup>178)</sup>, 대포배수지<sup>179)</sup> 등 3곳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.

또한 환경부가 상수도 조례 제·개정 시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「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」에 따르면 당해 연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기투자한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에 전년도 연간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

그런데 이천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단위사업비 산정 시 이천정수장과 장호원배수지 외에 2010년 대포배수지 신설 등<sup>180)</sup>에 투입된 사업비 19,863백만 원(시설용량 28,000톤/일) 및 장호원배수지의 시설용량 증가분(1,000톤/일) 등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고, 상수도 조례에 당해 연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 시 전년도 연간생산자물가상승률<sup>181)</sup>을 곱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채 상수도 조례 제정 시(2010. 8. 13.) 산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

175)상수도원인자부담금 = 단위사업비(총사업비/시설용량) × 부과대상사업의수돗물 사용량

176)2011. 5. 24. 경기도로부터 “이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(안)” 승인 통보, 2011. 7. 6. “이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” 고시

177)이천정수장의 시설용량: 60,000톤/일

178)장호원배수지(충주댐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, 기존 명칭은 목골배수지)의 시설용량: 10,000톤/일

179)대포배수지(충주댐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, 기존 명칭은 단월배수지)의 시설용량: 28,000톤/일

180)공사명은 “이천 상수도 송·배수시설 확장공사”이며, 대포배수지 신설 및 송배수관로공사수행

181)한국은행에서 발표

비(824,000원/톤)<sup>182)</sup>를 감사일 현재(2018. 5. 17.)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.

그 결과 [표]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188건에 대해 추가 투입 사업비, 증가된 시설용량 및 연간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단위사업비를 산출하였을 경우 대비 1,474백만 원 상당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다 부과하게 되었다.

[표] 이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재산정 명세

(단위: 톤, 건, 원)

연도	총부과량 (부과건수)	실제 부과한 원인자부담금		추가투입 사업비(시설용량) 및 전년도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			차액 (A-B)
		단위사업비	원인자부담금 (A)	전년도 생산자 물가상승률	단위사업비 <sup>주)</sup>	상수도 원인자부담금 (B)	
2013	7,140 (25)	824,000	5,883,360,000	0.7	788,481	5,629,754,340	253,605,660
2014	2,880 (30)	824,000	2,373,120,000	-1.6	775,865	2,234,492,076	138,627,924
2015	7,548 (39)	824,000	6,219,552,000	-0.5	771,986	5,826,950,158	392,601,842
2016	5,231 (52)	824,000	4,310,344,000	-4.0	741,107	3,876,728,302	433,615,698
2017	2,657 (42)	824,000	2,189,368,000	-1.8	727,767	1,933,675,911	255,692,089
합계	25,456 (188)		20,975,744,000			19,501,600,787	1,474,143,213

주: 재산정 단위사업비 783,000원(총사업비 76,745백만 원 ÷ 총시설용량 98,000톤/일)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값

자료: 이천시

**관계기관 의견** 이천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,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 시 추가 투입 사업비 및 증가된 시설용량을 반영하고 연간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여 단위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182)이천정수장 및 충주댐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(장호원배수지) 관련 총사업비(56,882백만 원)를 시설용량(69,000톤/일)으로 나눈 값

**조치할 사항** 이천시장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단위사업비 산정 시 추가로 투입된 사업비 및 증가된 시설용량 등을 반영하고 연간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「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단위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변경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(통보)